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5.



최 흥 린 의원

제안 설명서

제안자: 최 홍 린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, 이혼 등의 단독가구, 노인 고립가구 등 여러 형태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, 1인가구 삶의 질 향상,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,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9조는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10조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(최홍린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00923060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일자: 2023. 5. 26.

발의자: 최홍린, 임미연, 권숙자,
도하석, 황국주, 박정환,
남현주, 박종길, 박왕규

1. 제정이유

-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청년 임시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, 이혼 등의 단독가구, 노인 고립가구 등의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.
- 이에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,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)
- 나.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다.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, 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라.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마.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 및 제20조
- 나. 비용추계: 비용추계서 미첨부

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1인가구”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2. “1인가구 지원정책”이란 1인가구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3. “사회적 가족”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·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
3.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
4.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지원사업 등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
2.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
3. 건강,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
4. 문화·여가 생활 지원사업
5.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시설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<생략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~차.<생략>

3.~7. <생략>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가족실태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,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